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청년에 한하여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 연장 등 >
■ 김태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030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청년에 한하여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 연장 등	3

I. 제안경위

2024년 9월 13일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9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등의 취업지원서비스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회경제적 상황 악화로 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중앙회의 “2023년 청년 구직 현황 및 일자리 인식 조사”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의 평균 구직기간은 1.5년에 달하고 있음. 따라서 청년층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기간과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을 확대하여 청년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급자의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하고,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에 대해서는 수급자격자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단서 신설).

Ⅲ. 검토의견

1. 청년에 한하여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 연장 등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한하여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단서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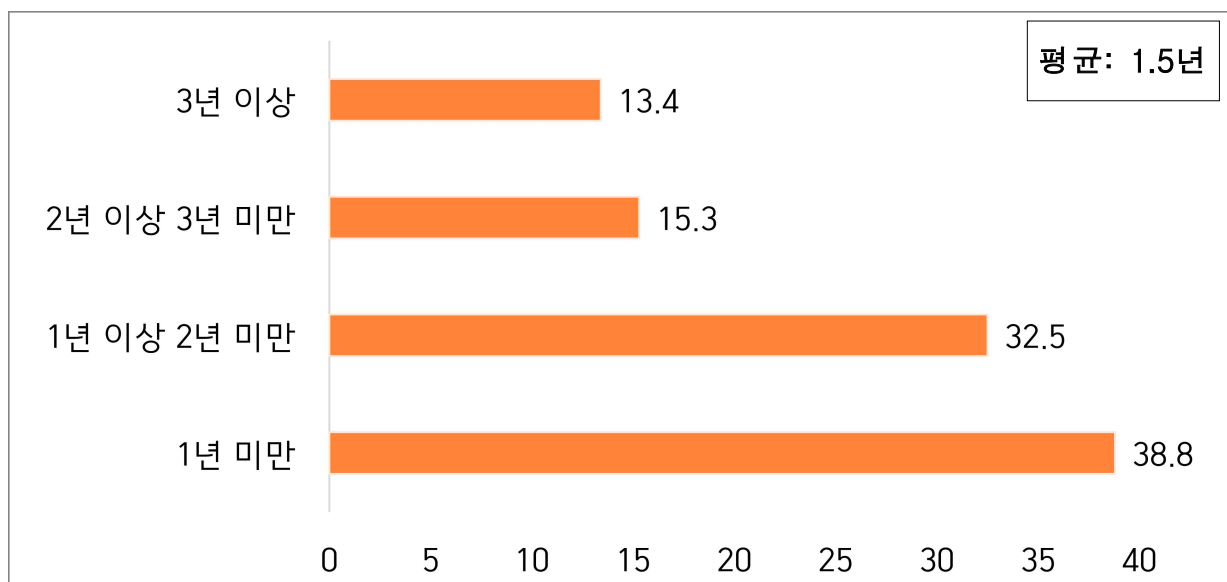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제15조(취업지원서비스기간 및 사후관리) ① 수급자가 취업지원서비스 중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하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라 한다)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u>1년</u> 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15조(취업지원서비스기간 및 사후관리) ① ----- ----- ----- ----- ----- ----- ----- <u>2년</u>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지급기간 및 지급절차) ①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지원 신청인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	제20조(지급기간 및 지급절차) ① - ----- ----- -----

취업지원서비스는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공하고, 구직촉진수당은 매달 50만원씩 6개월까지 지급함.³⁾

그런데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3 청년 구직 현황 및 일자리 인식 조사” 결과 청년 구직자의 평균 구직기간은 1.5년에 달하므로, 청년층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기간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그림] 청년구직자의 평균 구직기간

(단위: %)



※ 1) 주: 청년(20세 이상 34세 미만) 구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함

2)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2023 청년 구직 현황 및 일자리 인식조사”를 재편집

이에 개정안은 수급자의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

2)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취업활동비용을 지급받게 됨.

3) 2024년부터 부양가족수당이 신설되어 부양가족(18세 이하의 미성년자, 70세 이상의 고령자, 중증장애인) 1명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지급

급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청년층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두텁게 지원하여 조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특히, 2023년 기준 20세 이상 34세 이하 수급자격자의 구직촉진수당 지급건수는 792,292건에 달하는바, 구직경험이 없거나 적은 청년들에 대한 생계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표] 2021~2023년 구직촉진수당 지급실적

(단위: 건수, 백만원)

연도	연령	지급건수	구직촉진수당 지급액	부양가족수당 추가지급액*
2023	합 계	1,111,897	551,356	29,396
	19세 이하	28,088	13,846	1,288
	20세 이상 34세 이하	792,292	392,764	12,690
	35세 이상 69세 이하	291,517	144,746	15,418
2022	합 계	1,170,966	580,989	
	19세 이하	22,237	10,945	
	20세 이상 34세 이하	798,073	395,869	
	35세 이상 69세 이하	350,656	174,175	
2021	합 계	1,418,498	705,332	
	19세 이하	20,253	9,991	
	20세 이상 34세 이하	843,322	419,172	
	35세 이상 69세 이하	554,923	276,169	

※ 1) '23.1월부터 부양가족수당 추가지급 신설

2) 자료: 고용노동부

다만, 현행법상 1년의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취업지

원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⁴⁾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세 이상 69세 이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청년층에만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을 연장할 경우 다른 연령대 구직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점과 18~34세에 대해서는 구직촉진수당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완화되어 있다는 점⁵⁾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봄.

한편, 2023년 기준 전체 구직촉진수당 지급액 5,513억 5,600만원 중 73.7%인 4,066억 1,000만원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서 지급되고 있으므로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 연장 시 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⁶⁾

개정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및 기획재정부가 각각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법률안 심사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4) 15조(취업지원서비스기간 및 사후관리) ① 수급자가 취업지원서비스 중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하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라 한다)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수급자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표]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 비교

구분	18~34세	그 외
소득요건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요건	5억원 이하	4억원 이하
취업경험	취업경험 무관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6)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아직 비용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2024.11.14. 기준).

관계부처	의견
고용노동부	1)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연장: 현행 법령상으로도 기간 연장, 사후관리기간 등을 포함하여 최대 22개월*까지 참여 가능하고, 참여자의 평균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은 약 8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 검토 필요 *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1년 + 연장 6개월 + 사후관리 3개월 + 사후관리 연장 1개월 ** 평균 취업지원서비스기간: '22종료자 256일, '23종료자 246일 2) 청년층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 연장: 저소득·중장년층과의 지원 형평성,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촉진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중 검토 필요
기획재정부	1)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연장: 지원 기간 연장의 효과성 및 노동시장 복귀 유인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수용 곤란 2) 청년층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 연장: 타 취업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수용 곤란

문의처

02)6788-5538